

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8. 7. 14.

제안자 : 김광수의원 외

수정이유

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 제6조(위원의 자격)제1항 중 위원의 자격이 " 국가공무원법 " 으로 명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점을 고려하여 " 지방공무원법 " 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수정주요내용

1. 안 제6조 제1항의 "위원은 『국가공무원법』 제33조의 공무원
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" 에서 " 『국가공무원법』
제33조 " 를 " 『지방공무원법』 제31조 " 로 수정함.

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위원의 자격) ① 위원은 『지방공무원법』 제31조의 공무원
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u><신설></u>	제6조(위원의 자격) ① 위원은 『국가공무원법』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	제6조(위원의 자격) ① 위원은 『지방공무원법』 제 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